



가 정 통 신 문

http://sst.gen.hs.kr

교무실 : 606-5820

행정실 : 606-5810

팩 스 : 676-9910

2024학년도 지필평가 관련 주요 사항 및 선행유발 근절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2024학년도 지필평가 실시 계획 등의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1. 평가 실시일

학기	고사명	실시기간	비고
1학기	1차 지필평가	2024.5.2.(목)~2024.5.3.(금)	연간학사일정에 따름
	2차 지필평가	2024.7.1.(월)~2024.7.3.(수)	
2학기	1차 지필평가	2024.10.7.(월)~2024.10.8.(화)	
	2차 지필평가(3학년)	2024.11.20.(수)~2024.11.22.(금)	
	2차 지필평가(1, 2학년)	2024.12.11.(수)~2024.12.13.(금)	

2. 평가계획서 및 교과운영계획안 홈페이지 게시 안내

- 1) 교수·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서, 학업성적관리규정: 학교홈페이지 교육마당>평가자료실
- 2)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: 학교홈페이지 교육마당>학교교육과정
- 3) 시험 시간표, 시험 범위: 학교홈페이지>소통광장>학생공지사항

3. 지필평가 학생 유의 사항

- 1) 학생은 시험 시작 후 10분이 지나면 입실이 불가합니다.
해당 시험이 종료할 때까지 별도의 장소(대회의실)에서 대기하다가 교실로 입실한다.
- 2) 답안지에 학년, 반, 번호를 정확히 마킹하고 감독교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.
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답안카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3) 답안지에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이용하여 해당 답안에 정확히 마킹합니다.
불완전한 표기(너무 가늘거나 굵게 한 경우)로 인한 오류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4) 답안지에 예비 마킹을 하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습니다.
이로 인한 불이익 역시 수험생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5) 예비 마킹만 한 경우, 볼펜, 연필을 사용한 경우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백지 답안지로 간주되니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6) 답안을 수정할 경우 흰색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들뜨지 않도록 잘 눌러주도록 합니다.
수정테이프를 3번 이상 겹쳐 사용하였을 때 OMR카드 리딩이 어려우니 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7) 서술형(단답형) 답안을 수정할 경우, 두 줄로 굵고 수정 합니다.
- 8) 지필평가 이의신청은 지필평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실 교육연구부로 제출합니다.
(이의 신청서 서식: 학교홈페이지>교육마당>평가자료실 탑재)

4. 부정행위 유형 및 성적처리 방안

- 1)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의도적으로 보여준 학생이나, 본 학생 모두 해당 시험과목을 0점 처리한다.
- 2) 교사장 내에서 휴대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전자시계이다. 이외 휴대전화, 스마트 워치, 무선이어폰, 테블릿PC 등 각종 전자기기는 사용은 물론, 소지 또한 할 수 없다. 몸에 지니

는 것뿐만 아니라 **가방, 책상 서랍 속에** 놓아둔 경우도 소지에 해당한다. 전자기기 소지로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**당일 해당 교시까지 시험 과목을 모두 0점 처리한다.**

3)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

4) 다른 학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,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, 시험과 관계 있는 내용을 책상, 의자, 벽 등에 기록하거나 시험 도중 참고하는 행위, 부정행위라는 근거가 있을 때, 기타 시험 감독교사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

5) 인정점부여

- 지필평가에 한함.

- 수행평가는 인정점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교과협의에서 결정함.

- 인정점 부여 기준

① 100% 인정점 : 학교장 허락된 대회 참가, 상고, 천재지변 결시 혹은 법정전염 병결시

② 80% 인정점 : 병결(의사의 진단서), 생리통(월1회, 의사의 소견서, 출석 인정)

③ 최하점의 차하점(배점 차하점) : 사고(미인정)결시자, 개별 체험활동 참가

④ 0점 : 부정행위자, 부정행위 협조자

⑤ 기타 사항 :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.

※ 한 학기가 위탁되어 성적이 위탁기관에서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에 와서 지필평가를 치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외 모든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.

5.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규제 학부모 안내 사항

1)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

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.

「교육기본법」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

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

2) 선행학습의 문제점

○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

○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

○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

○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

3)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

○ 교육과정 편성·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

가) 점검기준: 학교교육과정 편성·운영 일치 여부

교과별(학년별)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

나) 점검시기: 학기별 1회 이상

다) 점검교과: (고교)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교과(군) 과목 전체

※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: 계획(편성)된 교육과정 운영(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),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

4) 학부모의 책무

○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(학부모의 책무)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(수업공개의 날, 학부모 회의 등)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,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.

2024. 4. 22.

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

